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947

발의연월일: 2025. 3. 14.

발 의 자:구자근・박준태・김선교

최수진 · 김성원 · 인요한

배준영 · 조지연 · 김도읍

이만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규정된 세관의 수사 권한은 밀수와 관세포탈, 불법 외환거래 등에 한정되어 있어, 무역 관련 범죄 수사 중에 사기·횡령 등의혐의가 확인됐거나 의심되더라도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가 지연되거나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세법」에 따라 관세범(關稅犯)의 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세 관공무원에게 「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위반행 위를 수단으로 한 「형법」 제347조(사기) 및 제355조(횡령, 배임) 등 의 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 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4호사목 신설).

법률 제 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4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관세법」, 「대외무역법」에 규정된 범죄, 「외국환거래법」에 규정된 지급수단・증권의 수출입에 관한 범죄, 「외국환거래법」에 규정된 수출입거래에 관한 범죄, 수출입거래와 관련되거나 대체송금을 목적으로 「외국환거래법」 제16조제3호·제4호의 방법으로 지급또는 수령하는 경우의 용역거래・자본거래에 관하여 「외국환거래법」에 규정된 범죄,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한 범죄,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1호의 외국환업무를한 자와 그 거래 당사자・관계인에 관하여 「외국환거래법」에 규정된 범죄를 수단으로 하는 「형법」 제347조, 제352조(제34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에 규정된 범죄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혂 행 개 정 아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4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조와 제5조에 따라 사법경찰관 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의 직무 범위와 수사 관할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죄로 한정한다.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14. 제5조제17호에 규정된 자의 📗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범죄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신 설> 사.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관세법」, 「대외무역<u>법」에 규정된</u> 범죄, 「외국환거래법」에 <u>규정된</u> 지급수단·증권의 수출입에 관한 범죄, 「외 국환거래법」에 규정된 수 출입거래에 관한 범죄, 수 출입거래와 관련되거나 대 체송금을 목적으로 「외국 환거래법 세16조제3호 • 제4호의 방법으로 지급 또 는 수령하는 경우의 용역 거래 · 자본거래에 관하여

「외국환거래법」에 규정 된 범죄, 「외국환거래 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한 범죄,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1호의 외국환 업무를 한 자와 그 거래 당사자 • 관계인에 관하여 「외국환거래법」에 규정 된 범죄를 수단으로 하는 「형법」 제347조, 제352 조(제34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 제355조 및 제 359조(제355조의 미수범으 로 한정한다)에 규정된 범 죄 15. ~ 50. (현행과 같음)

15. ~ 50. (생략)